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 광 주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8구단10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11.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한 별지 1.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0,840,750원, 지방교육세 6,637,420원, 농어촌특별세 3,542,020원의 부과처분과 별지 1.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28,235,220원, 지방교육세 19,336,070원, 농어촌특별세 9,668,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한 별지 1.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28,235,220원, 지방교육세 19,336,070원, 농어촌특별세 9,668,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8. 광주 광산구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아크릴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30. 별지 1.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4. 6. 13. 별지 1.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나머지 지분 1000분의 229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1. 30.과 2014. 6. 17. 각 감면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 9. 30. 원고에게 "원고 회사는 관계회사인 소외 회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하고 소외 회사를 폐업하지 않고 동종업종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또한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 이전한 이후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이는 기존 법인인 소외 회사와의 사업 연관성 및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법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8. [redacted]시장에게 피고의 취득세과세 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광주광역시장은 2015. 8. 26.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불채택 결정에 불복하여 2016. 3. 24. 감사원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9. 21.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는 법인 지배구조에 있어서 지분권자가 두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별개의 회사인바, 특히 소외 회사는 1998. 8. 18. 설립당시부터 간판제작업 및 광고대행업, 실내장식업, 광고재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원고는 2011. 10. 18. 설립초기부터 간판제작이 아닌 아크릴판인 알투글라스 이용한 광고용문자판 시스템의 제작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설립은 소외 회사의 사업확장이나 새로운 영업의 추가가 아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18. 특수아크릴 가공업, LED 조립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특수아크릴 가공, LED 조립 가공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원고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세금서 합계표 등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LED와 프랑스에서 수입한 특수아크릴(Altuglass) 제품을 가공, 광고용 문자판을 제작하여 소외 회사 등의 광고판 시공회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8. 8. 18. 간판제작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업태는 제조·서비스로 종목은 간판제작·광고로 표기되어 있으며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세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면 주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용 문자판으로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식 지분 현황을 보면 법인 설립 당시에는 현 대표이사의 아들 D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였다가 2013년도에 증자를 하여 현재까지 현 대표이사와 그 친족이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15%,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이 85%를 각 소유하고 있다.

| 주주명 (원고 대표이사와의 관계) | 지 분 율 | | | |
|---|---|---|---|---|
| | 원 고 | | 소외 회사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1 ~ 2013 | 2014. |
| E(남편) | - | 31.67 | 85.0 | 85.0 |
| F(본인) | - | 20.0 | - | 15.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 | | | | |
|---|---|---|---|---|
| G(딸) | - | 28.33 | - | - |
| D(아들) | 100 | 20.0 | - | - |
| 기 타 | - | - | 15.0 | - |
| 합 계 | 100 | 100 | 100 | 100 |

3) 원고의 대표이사 F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G은 소외 회사의 감사이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의 사내이사(2011. 11. 14. 사임)였다.

4) 원고는 설립당시 소외 회사의 본점과 같은 장소에 본점을 설립하였고 그 이후 아래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는 같은 날, 같은 주소로 본점을 변경하였다.

| 본 점 주 소 | 설립 · 변경등기일 | |
|---|---|---|
| | 원고 | 소외 회사 |
| 광주광역시 광산구 B | 2011. 10. 18. | 2003. 11. 24. |
| 광주광역시 광산구 H | 2011. 12. 21. | 좌 동 |
| 광주광역시 광산구 I | 2012. 2. 1. |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J | 2014. 7. 16. | 〃 |

5) 피고에게 등록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원고는 2012. 3. 7. 업종을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주생산품을 아크릴 간판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업종을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으로, 주생산품을 간판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또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아래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에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2012년에 영업내용을 '옥외광고물 제작 등'으로, 소외 회사는 2003년에 영업내용을 '간판제작'으로 각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였다.

6) 원고의 인터넷홈페이지(K)의 회사소개/인증현황 메뉴에 등재된 각종 인증현황을 보면, 중소기업확인서에는 업체명이 '주식회사 C'(소외 회사)로, ISO 9001 인증서에도 '주식회사 C'(소외 회사)로 되어 있다.

7) 취업포탈 사이트인 L의 원고 현황(기업연혁)에 '엘이디 조립, 특수아크릴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실제경영자 E(대표이사 D)에 의해 광주 광산구 B에서 설립이라고 되어 있고, 원고 현황 (기업개요)와 소외 회사 현황 (기업개요)에 동일하게 「핵심가치 :팀워크/상호존중, 기업비전 : 옥외광고업계 글로벌회사, 사업목표 : 최고의 만족을 통한 사업 성장」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8) 원고의 나눔 활동에 관한 2015. 2. 9.자 M언론의 기사에 'C 및 N(원고의 종전 명칭) E 회장이'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1. 23.자 O재단 기사에도 '주식회사 A 대표이신 E 대표님께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9호증, 을 제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7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설립은 신설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설립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E과 그의 처자식이 원고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F(E의 처)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G(E의 딸)은 소외 회사의 감사이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의 사내이사(2011. 11. 14. 사임)였다.

② 원고는 소외회사의 본점과 같은 장소를 주소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두 회사는 같은 날 또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③ 원고가 제작한 광고용 문자판을 소외 회사가 공급받아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등 두 회사의 생산활동에 연관성 및 연속성이 있다고 보이고, 두 회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세분류, 즉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36950)'에 속한다.

④ 한국 내 알투글라스를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P(주)는 원고 설립 이전인 2014년까지는 소외 회사에게, 원고 설립 후에는 원고와도 거래를 계속해 왔고, 원고의 다른 거래처인 Q(주)도 원고 설립 전에는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해 왔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0년, 2011년 R회사, S회사, T회사 등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은 원고가 설립되어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⑤ 원고와 소외회사는 옥외광고업 등록 또는 공장등록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⑥ 원고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인증현황이 소외회사로 되어 있으며, 취업포탈사이트에도 실제 경영자 E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표기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회사의 기업개요가 동일한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11. 11. 14. 사내이사를 사임한 이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E이 원고의 대외활동에서는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⑦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가 2011. 11. 30. 취득한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가 사용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2016. 12. 12. 주식회사 U에 매각하였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외벽 및 입구에 걸린 회사 명패에 원고의 명칭만 표시되어 있고 원고 주장과 달리 소외회사가 사용한다는 공장 내 일부 건물에 소외 회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의 명칭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V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6. 13. 경락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 1000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승계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같은 항 제7호의 1000분의 40을 적용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통하여 취득한 것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의 효과는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는 소멸시키지만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종전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경락에 의한 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를 원시취득이라고 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1. [redacted]구 W 외 4필지 토지 3,802㎡, 건물 922㎡

2. [redacted]구 X 외 1 필지 토지 20,847.1㎡, 건물 8,780.14㎡ 중 지분 1000분의 77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별지 2.

#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